

2020년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2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정인,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28건(안건번호 제2020-50972호~5266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50972호는 민원인이 쓴 소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 전재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자가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0973호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업용 소프트웨어 판매글을 게시한 사안임.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2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실연자명, 저작물명, 7쪽의 저작물명, OSP명, 9쪽의 기기명, 10쪽의 본원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기기명, 11쪽의 본원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기기명, 12쪽의 기기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실연자명, 저작물명, OSP명, 본원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기기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한글과컴퓨터',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TV조선', '미국 HBO', '넷플릭스', 'tvN', '유니버설픽처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소니픽처스', '(주)씨제이이엔엠', '이십세기폭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워너브라더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모바일빅파일' 등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1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50972호~5266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0972호

의대상 게시물을 신고하였음.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저작자인 민원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라면 해당 콘텐츠가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임. 다만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복제물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가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불법복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전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저작권자가 본 건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컨대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전문위원은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복제물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상정을 제의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이러한 유형의 민원인 신고 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저작권 등록증이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건이 대부분이었음. 기존 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사안별로 가, 부결 여부가 달랐음. 최근에 심의위원이 추가 위촉됨에 따라 사안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신문고 혹은 민원인 신고 건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에 전체위원회 상정을 제의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은 분명해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다만 민원인이 신고한 불법복제물

이 상업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사안 공유와 기준 확정을 위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A 위원: ('☆☆☆'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해당 사이트는 작가 지망생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로 보임. 어떤 등록작가는 출판사 '○○○'와 '☆☆☆' 사이트에 게재한 소설의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즉 '☆☆☆' 사이트는 사이트에 게재된 소설이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 출판되지 않더라도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될 수 있고, 작가는 유료 판매로부터 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음. 이외에도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독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리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작가 지망생들의 장이 됨.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은 독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며, 작품이 외부로 유출되어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임.

'☆☆☆' 사이트의 특성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원 게시물이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자체에서 유료 판매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며,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본 건 사이트의 정도가 아닌 블로그, 동호회 밴드 등에서 게시된 소설이 불법 복제·전송될 경우에 한해 전체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무료로 배포하는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데, 학교 밖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 C 위원: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매가 중단되어 있음. 이런 경우 어떠한 종류의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시정권고 조치의 종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라는 총 3가지 종류의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에서 '가결'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권고하는 것을 의미함.
- A 위원: 심의 시점에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현재 판매는 중지되어 있으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

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참고로 시정권고 행정조치의 직접 상대방은 OSP이며, 실제로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OSP가 아닌 복제·전송자인 게시자임. 시정권고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계정 정지로 이어짐.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특별한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97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0974호~5266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1041호~51044호는 가수 'Ariana Grande', 'Justin Bieber'가 실연한 곡 'Stuck with U'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045호는 가수 '백현(BAEKHYUN)'이 실연한 곡 'Love Again'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052호는 가수 '펜타곤'이 실연한 곡 '빛나리+봄눈'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055호~51056호는 가수 '로이킴'이 실연한 곡 '살아가는 거야'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057호~51060호는 가수 '거미'가 실연한 곡 'My Love'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107호~51111호는 게임 '삼국지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11~13'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51205호~51208호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SketchUp Pro'를, 제2020-51212호~51222호는 '어도비시스템즈'사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50974호~5266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 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B 위원,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50974호~5266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974호~5266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0972호~5266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정인

위원 이성엽